

미디어법 통과…언론 시장 빅뱅

미디어 선진화나 여론 독과점이냐

대기업 진출·신문, 방송 겸영 허용
신성장 산업 기대 속 부작용 큰 우려

미디어 관련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디어시장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.

특히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의 길이 열리면서 미디어 간 융합의 기폭제가 마련됐고 미디어도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됐다.

하지만, 미디어 시장에 자본집중이 이뤄지면서 방송의 공공성 퇴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또 조선·중앙·동아 등 거대 신문사의 방송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여론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
◇신문·대기업의 방송 진출= 지난 1980년 신문부의 신문·방송 겸영 금지 조치 이후 계속되던 구도가 허물어지고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·사회·문화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우선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이 등장하면서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콘텐츠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. 또 시대와 환경의 변화로 인쇄매체만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신문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방송사업에 진출,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.

하지만, 복합 미디어매체의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거나 형편이 어려운 신문사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여론 다양성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국회 통과 미디어 3법 내용 신문·대기업, 2012년까지 방송 경영권 지배 금지

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, IPTV 법 등 이른바 ‘미디어 3법’을 통과했다.

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

◇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=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, 일간신문·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.

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%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. 무기자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한 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재단의 자체 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.

◇방송법=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

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,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.

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%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·지분소유를 금지함.

또 대기업,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제한함.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,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자

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을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, 방송 광고시간 제한,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.

◇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(IPTV 법)=대기업,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%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함. /연합뉴스

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.

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

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, IPTV 법 등 이른바 ‘미디어 3법’을 통과했다.

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

◇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=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, 일간신문·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.

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%

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.

무기자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 행

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한

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재단의 자체 수

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.

◇방송법=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

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

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, 유가 판매부수

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

개해야 함.

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% 이상인 경우

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

식·지분소유를 금지함.

또 대기업,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

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

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

배할 수 있도록 제한함. 지상파방송과 종

합편성채널,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자

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을 초과 사

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, 방송

광고시간 제한,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

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.

◇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(IPTV

법)=대기업,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

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

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%를 초과해 소

유할 수 있도록 함. /연합뉴스

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.

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

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, IPTV 법 등 이른바 ‘미디어 3법’을 통과했다.

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

◇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=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, 일간신문·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.

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%

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.

무기자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 행

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한

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재단의 자체 수

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.

◇방송법=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

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

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, 유가 판매부수

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

개해야 함.

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% 이상인 경우

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

식·지분소유를 금지함.

또 대기업,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

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

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

배할 수 있도록 제한함. 지상파방송과 종

합편성채널,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자

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을 초과 사

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, 방송

광고시간 제한,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

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.

◇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(IPTV

법)=대기업,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

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

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%를 초과해 소

유할 수 있도록 함. /연합뉴스

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.

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

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, IPTV 법 등 이른바 ‘미디어 3법’을 통과했다.

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

◇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=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, 일간신문·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.

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%

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.

무기자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 행

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한

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재단의 자체 수

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.

◇방송법=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

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

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, 유가 판매부수

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

개해야 함.

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% 이상인 경우

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

식·지분소유를 금지함.

또 대기업,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

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

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

배할 수 있도록 제한함. 지상파방송과 종

합편성채널,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자

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을 초과 사

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, 방송

광고시간 제한,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

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.

◇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(IPTV

법)=대기업,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

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

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%를 초과해 소

유할 수 있도록 함. /연합뉴스

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.

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

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, IPTV 법 등 이른바 ‘미디어 3법’을 통과했다.

다음은 이날 통과된 미디어법 요지

◇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=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금지를 폐지하고, 일간신문·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함.

대기업은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%

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.

무기자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 행

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 한

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재단의 자체 수

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.